

석사학위논문

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회계학과

고영민

2010년 2월

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동 욱

고 영 민

이 논문을 회계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2월

고영민의 회계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2010년 2월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동기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5
제 2 장 .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7
제 1 절. 감사인 유형에 대한 연구.....	7
제 2 절.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	9
2.2.1. 외국의 선행연구.....	9
2.2.2. 국내의 선행연구.....	11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17
제 1 절. 가설 설정	17
제 2 절. 연구 모형.....	22
3.2.1. 감사품질의 측정.....	22
3.2.2. 연구 모형.....	24
3.2.3. 연구 표본.....	27
제 4 장.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29
제 1 절.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29
4.1.1.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29
4.1.2. 상관관계 분석.....	35
제 2 절. 회귀분석결과.....	37
4.2.1. 가설 1의 회귀분석 결과.....	37
4.2.2. 가설 2의 회귀분석 결과.....	40
4.2.3. 가설 3의 회귀분석 결과.....	42
4.2.4. 가설 4의 회귀분석 결과.....	44

4.2.5. 가설 5의 회귀분석 결과..... 46

제 5 장. 결론..... 48

제 1 절. 결 론 48

제 2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49

참고문헌..... 50

국문초록..... 53

영문초록..... 55



표 목 차

< 표 1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	4
< 표 3-1 > 감사인의 종류	17
< 표 3-2 > 감사인 현황(2008. 12. 31현재)	18
< 표 3-3 >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비교	19
< 표 3-4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인별 제주도내 피감사 회사 수	19
< 표 3-5 > 감사인별, 연도별 최종 표본기업 수	28
< 표 4-1 > Big4와 Non Big4 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30
< 표 4-2 >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31
< 표 4-3 > Big4와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32
< 표 4-4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33
< 표 4-5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34
< 표 4-6 >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36
< 표 4-7 > Big4와 Non Big4 의 회귀분석 결과	39
< 표 4-8 > Big4와 기타회계법인결과	41
< 표 4-9 >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43
< 표 4-10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45
< 표 4-11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4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동기

일반적으로 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하고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전달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재무제표는 외부의 독립된 제3자에 의한 회계감사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회계감사(auditing)는 감사대상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었는지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함으로써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¹⁾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경영자의 투명한 회계처리와 함께 회계감사인의 성실한 감사가 요구된다.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영자와 정보이용자간의 정보불균형(asymmetry of information)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감시장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난 2001년 회계투명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받아 왔던 미국에서 Enron, Global Crossing, Worldcom, Merck 등의 기업에 대한 분석회계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미국 의회는 2002년 Sarbanes-Oxley Act(SOX)을 제정하여 기업과 임원의 책임 강화,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감사인의 책임 강화를 통해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1997년 한보철강, 기아자동차의 부도와 대우, SK글로벌의 분석회계사건이 발생하였으며, 분석회계를 방지하고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감사실효성 제고를 위한 감리기능 강화 등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감사인은 전문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회계감사의 오류에 대하여는 감독기관으로부터 엄중한 징계처분을 받고,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감사인의 과실에 대하여 직접 소송으로 그 책임을 추궁받게 된다. 따라서 감사인은 법인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 구성원들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1) 회계감사기준 제3조. 제1항.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회계정보의 신뢰성은 외부 감사인이 제공하는 감사서비스의 품질에 따라 영향을 받게된다.²⁾ DeAngelo(1981)는 이러한 감사품질에 대해 재무제표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확률과(전문성) 이를 보고할 확률(독립성)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였다.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은 감사품질이 낮은 감사인보다 회계상의 중대한 오류나 부정행위를 적발할 능력과 이를 보고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이익조정 행위가 억제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증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감사인별 감사품질에 대한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관과 백원선(1998)은 감사인 유형을 Big6(현재는 Big4)과 Non Big6로 구분한 후 감사품질 대용치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Big6의 감사시간이 Non Big6보다 높게 나타나 Big6의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높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김문철과 황인태(1998)는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하여 감사인별 감사 품질을 실증분석 하여 감사인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연구에서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즉, Big5의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높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일 등 1999, 박용철과 심한택 2002, 나종길과 최관 2003, 심한택 2005)

최국현(2007)에서는 대형회계법인(Big5)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Big5 감사인과 국내 Local Big 감사인, 기타 감사인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 품질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은 Big5 감사인이 Non Big5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g5 감사인과 Local Big 감사인간 재량적 발생액은 제한적인 차이만 존재하였다. 또한 Local Big 감사인을 대형 감사인으로 분류하여 Big5 감사인과 더불어 대형 감사인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 기타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2) 차별적 감사수요이론에 의하면 감사인은 높은 품질의 감사인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으로 차별화 되어 있으며, 수요자인 기업도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과 낮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호하는 기업으로 차별화되어 있다. (Francis et al.(1999))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는 감사인의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품질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로서 감사인의 규모에 기초한 업무범위 제한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일반이용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회계감사기준에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시 따라야할 회계감사기준과 감사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회계감사기준은 감사대상기업과 일반대중이 감사인이 달성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최소한의 수준의 감사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에 대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 공인회계사가 감사시 실시하여야 할 감사절차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유도하여 회계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견해는 전문가로서 감사인의 자격 그리고 기준과 감사절차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한 감사의 품질은 감사인의 규모와는 무관하게 유지될 수 있으므로, 시장기능이 아닌 법규정으로 감사인의 규모에 근거하여 감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이러한 주장과는 반대로 감사인의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DeAngelo(1981)는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감사인의 전문성이 높고, 독립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주장하였다. 감사인 규모가 크고 명성이 높은 대형회계법인일수록 감사실패에 대한 명예훼손의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높은 품질의 감사를 제공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에 의하면 대규모 회계법인이 제공하는 회계감사의 품질이 소규모 회계법인의 것보다 높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외부감사수입제한을 둘러싸고 감사반과 회계법인, 규모가 다른 회계법인간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기도 하였다. 과거 감사인 조직형태별 자산규모에 따른 제한은 회계법인의 경우 소속공인회계사수가 100인 이상인 경우는 제한이 없었고, 소속 공인회계사수가 100인 미만인 경우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8000억 원 미만인 회사를 감사할 수 있었으며, 감사반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00억 원 미만(계속감사인 경우 500억 원 미만)인 회사만 감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정부는 외감법 시행규칙을 개정(1999. 7. 2, 재정경제부령 제100호)하여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수 제한제도를 폐지하였고,

이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는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을 폐지했다.

이에 정부는 다시 외감법 시행규칙을 개정(2003. 06. 30, 재정경제부령 제316호) 별표를 삭제하고 감사인이 감사할 수 있는 회사의 규모에 관한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대형 금융기관에 대한 회계감사의 적절한 실시를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8000억 원 이상인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종전과 동일하게 소속공인회계사의 수가 100인 이상인 회계법인중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감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은 < 표1 >와 같다.

< 표 1 > 감사인의 회계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 연혁

구분		1994. 3	1998. 6	2000. 7	2003. 6
회계법인	50인 미만	3000억 원 미만			폐지
	50인 이상	5000억 원	8000억 원	8000억 원	
	100인 미만	미만	미만	미만	
	100인 이상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합동회계 사무소*	14인 미만	1000억 원 미만			폐지
	14인 이상	1000억 원 미만			
감사반*	초도 감사시		3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폐지
	계속 감사시	200억 원 미만	500억 원 미만	1000억 원 미만	

*합동회계사무소 : 1997년 12월 31일 폐지, 감사반 1990년 3월 21일 신설

본 연구에서는 도내 감사시장의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을 감사반으로 까지 세분화 시킨 후, 현재 감사반 등의 회계감사 대상회사 자산규모 제한이 사실상 폐지된 상황에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면 도내 감사품질에 대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 많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들도 활발하게 제주로의 이전 및 설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들이 도내에서 감사인 유형을 선택함에 있어 감사품질은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제주지역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에 감사반을 추가하여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 본사를 둔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Audit quality)이 차별화 되어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먼저 외국 대형회계법인과 제휴한 감사인(Big4)이 감사한 기업과 그 이외의 감사인(Non Big4)이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여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와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도내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을 Big4, Big4를 이 외의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세분화 시켰을 때, 그 결과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제주지역의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 및 투자전문 관련 업종에 속하지 않는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재무자료 및 시장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실증분석은 기술적통계량에 의한 집단간 차이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이루어진다. 먼저 감사인 유형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며, 각 집단간에 재량적 발생액의 차이를 검증한다. 집단간 차이분석결과에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변수들을 통제 한 후 재량적 발생액과 감사인 유형 사이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한다.

이를 통해 감사인 별 감사품질이 명확히 밝혀지면 제주에 이전 설립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에 기업들도 감사인 선택 시 유용한 정보로 사용 할 수 있고,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들에게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감사인 별 품질차이가 발생한다면 발생 원인이 무엇이며, 품질차이를 최소화 할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제 2 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 1 절 감사인 유형에 대한 연구

일반적으로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평가에 있어 감사인 유형을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실제로 Tech & Wang (1993), Becker et al.(1998), Francis et al(1999), Becker(1998), Bartove(2001)의 연구에서는 Big5(현재는 Big5)와 Non Big5 간의 감사품질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감사품질의 대응치로 대형회계법인(Big4)을 사용하는 것은 Big4가 감사인 규모를 나타내주는 측정치이기 때문이다. 규모가 큰 대형회계법인은 고도의 감사기법을 지니고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회계정보의 부정이나 오류가 발견될 확률이 높아 감사인의 전문성이 향상되고 회계정보의 유용성이 높아진다. 또한 대형회계법인은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보다 피감사인 즉, 고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³⁾ 따라서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전문성과 독립성이 증가하여 감사품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다 (김문철 황인태 1998).

국내 또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와 제휴 여부를 기준으로 감사인 품질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감사품질 대응치 선정에 따라 그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최관과 백원선 1998, 박용철과 심한택 2002, 나종길과 최관 2003, 최정호 2005, 심한택 2005).⁴⁾

3) 피감사인을 많이 보유하면, 그 감사인의 총수입에서 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 따라서 어느 한 기업의 부당한 회계처리를 눈감아 주고, 그 기업을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얻는 수익보다 장기적으로 다른 잠재고객을 잃어버림으로써 상실하는 비용이 더 크게 된다. 때문에 감사인 규모가 클수록 독립성이 향상된다. (DeAngelo 1981)

4) 최관과 백원선(1998) : 감사인 유형을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으로 구분 한 후, 감사품질 대응치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사용. 연구 결과에 의하면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의 감사보수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박용철과 심한택 (2002) : 감사품질 대응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피감사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에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종길과 최관 (2003) : 재량적 발생액이 높은 기업이 Big5 감사인을 선택하는 차별적 감사수요가 있는지를 분석. 분석결과 높은 회계발생액의 기업일수록 Non Big5 감사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김문철과 황인태 (1998)는 감사인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선행연구와는 방법을 달리 하였다. 그들은 전기손익수정항목을 이용하여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분석하였는데 감사인 유형 구분을 좀 더 세분화 하였다. Big6 회계법인과 국내 대형회계법인의 시장점유율에 크게 차이가 없음을 발견하고, 감사인 유형을 미국 대형회계법인(Big6)과 제휴 여부와 피감사회사의 수를 이용하여 Big6,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ANOVA검증과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실증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ANOVA검증과 회귀검증모형 모두에서 Big6와 Local Big 사이에는 감사품질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Local Small이 감사하는 피감사법인의 전기수정항목은 Big6와 Local Big이 감사한 기업들의 전기손익 수정항목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큰 금액임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전기손익수정이익에 비하여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좀 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경우 더욱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실시한 Big6간의 품질차이에 대한 검증에서는 피감사회사의 전기손익수정금액에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게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회계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감사품질평가에 있어서 기업규모의 통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이러한 결과를 제한적이기는 하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품질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Big6와 Non Big6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감사인 규모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종일,이명곤,원정영(1999)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는데 감사인 유형을 구분함에 있어 다음의 5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첫째로, 김문철 황인태 (1998) 분류 방법인 미국 대형회계법인 Big6와의 제휴 여부,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체결한 피감사회사의 수를 이용하여 국내 대형회계법인(Local Big), 합동회계사무소(Local Small)로 구분하였다. 위의 3집단간의 감사품질의 차이를 ANOVA 검증한 결과, 감사품질에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감사품질 면에서는 김문철 황인태 (1998)와 상반되게 Big6와 Local Big의 감사품질이 Local Small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둘째로 정문중 (1996)의 연구에서 제시하였던 산업별 전문감사인과 그 이외

의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 한 후 두 집단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비교하였다. 두 집단간에는 t-검증과 Wilcoxon-부호순위검증에서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게 전문감사인보다 기타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타났다. 셋째로, 금융감독원의 감사인 평가등급에 따른 1등급 감사인과 2등급의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두 감사인 간에는 t-검증에서만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였다. 2등급의 감사인이 감사한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적게 나타났다. 넷째로, 연구대상 기간 중 특정회계법인이 산업별로 감사한 감사대상 회사 수, 즉 산업별 시장 점유율 1위~3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1998년 3월말 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회계법인별 사업보고서의 자산총액,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평균감사수임료 등의 현황을 이용하여 1위~5위 감사인과 그 외 감사인으로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 하였다.

제 2 절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

감사품질은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 할 수 있는 가능성(전문성)과 발견된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독립성)의 결합확률로 정의된다(De Angelo, 1981). 일반적으로 높은 품질의 감사인은 보다 효과적인 감사기법과 전문성을 겸비하고 있으므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회계추정 등을 방지하거나 발견하여 오류나 부정을 보고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실제로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감사품을 직접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다양한 차원에서 감사품을 분석하여 왔다.

2.2.1. 외국의 선행연구

미국에서는 많은 연구가 감사인 규모 즉 Big6 감사인(현재는 Big4)과 Non Big6

감사인간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인의 규모, 즉 대형 회계법인과 그렇지 않은 회계법인으로 감사 품질 차이를 구분하거나(Francis, 1984; Palmrose, 1986), 감사인 교체(Smith, Nichols, 1982)등을 이용하여 감사의 질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한편에서는 새로운 정보기술과 새로운 감사기법의 소개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는 여전히 노동 집약적인 업무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면서 감사에 소요된 실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을 추정하기 위한 적절한 대용변수라고 주장하기도 한다(Caramanis 1999).

Deis an Giroux (1996)은 초도 감사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그리고 감사품질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초도 감사시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감사보수를 보였다. 이를 통해 초도 감사시 감사보수의 할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초도 감사시 낮은 감사보수에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은 증가하여 높은 감사품질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Francis et al.(1999)은 재량적 발생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보고 이익의 질이 낮다고 인식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높은 발생액으로 인한 재무보고의 신뢰성 하락을 극복하기 위하여 고품질의 감사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발생액이 큰 기업은 자산의 현금화 실현 및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며 회계감사인의 입장에서는 큰 발생액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의견의 형성과 관련하여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고 주장 하였다. 즉, 큰 발생액이 의미하는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줄이기 위해 회계감사인은 적정의견의 표명에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며, 이에 따라 발생액이 큰 기업일수록 비적정의견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사의견 보수주의는 높은 감사품질의 회계감사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Big6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 하였다.

Bartove et al. (2000)은 감사품질의 대용치로서 “이익조정과 이를 보고 할 가능성”을 사용하였다. 즉 재량적 발생액이 이익조정의 정도를 나타낸다면 재량적 발생액이 높을수록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비적정을 받은 기업과 이에 대응하는 통제기업을 선정 한 후 두 집단의 재량적 발생액을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비적정 의견을 받은 집단의 재

량적 발생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구 가설을 뒷받침 해 주었다.

2.2.2. 국내의 선행연구

정문종, 이제맹(1996)의 연구에서는 감사시장에서 유효한 감사품질 대용치로 산업전문성의 가능성을 들었다. 특정 산업에 높은 시장점유율을 갖는 감사인을 산업별 전문감사인으로 분류하고 특정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은 해당 산업에서 우수한 감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산업 내에서 저급한 감사를 수행 했을 때 전문감사인으로서 명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할 유인을 가진다고 보았다. 연구 결과 거의 모든 산업에서 CR(concentration ratio:산업별 감사 집중도)와 SR(Specialization ratio: 산업별 감사인 특화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거의 전 산업에서 많은 감사인들이 계속 자기의 전문 산업내의 점유율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별 전문성과 감사품질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관, 백원선(1998)의 연구에서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통하여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감사보수와 관련해서는 Big6 제휴법인과 국내법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감사시간과 관련해서는 Big6 제휴법인이 타 감사인보다 감사시간을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Big6 제휴 법인의 합리적 확신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초도 감사시의 로우볼링(low balling) 현상을 검증하기 위하여 초도 감사와 계속감사의 감사시간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초도감사와 계속감사간에 감사시간의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자료 수집을 회계감사법인으로부터 취득 하였다는 것으로 회계법인은 설문지에 실제 감사보수가 아닌 감사계약서상의 감사보수를 기재할 가능성이 있고 감사시간도 실제보다 더 많이 기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즉 자료의 객관성이 확보하지 못하였다.

나종길, 최기호(2001)은 재량적 발생액과 비적정 감사의견간의 관계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보고 Big6와 Non Big6간의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재량적 발생액

이 클수록 재무제표상의 오류정도가 클 것이며, 높은 감사품질을 유지하는 감사인이라면 이를 적절히 감사의견에 반영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러한 성향이 감사인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분석 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기 위해 수정된 Jones모형과 Jeter and Shivakumar(1999)가 제안한 CFO모형(발생액과 순 현금흐름이 갖는 음의 상관관계를 통제하기 위해 수정 Jones모형에 현금 흐름 수준을 독립변수로 추가)을 이용하였다. 또한 이익조정이 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로짓분석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과 비적정의견 간에는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지만 CFO모형에 의해 측정된 결과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감사인간의 유의적인 감사품질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재량적 발생액 산출시 수정 Jones모형과 CFO모형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을 때 결과가 상이하었다는 것이다.

박용철, 심한택(2002)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 선택을 통한 이익조정 유인이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먼저 외국 대형 회계법인 Big6과 제휴한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높은 것으로 보았고 Big6의 재량적 발생액은 체계적으로 작을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집단별 Big6, Non Big6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 변수로 하고 감사인이 Big6인지의 여부를 독립변수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t-검정과 회귀분석 모형 모두에서 감사인의 유형에 따라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 감사품질의 대용변수로 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 Big6와의 제휴여부가 감사인의 산업별 전문성 여부는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 제한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나종길, 최관(2003)은 높은 재량적 발생액을 보이는 기업이 고품질 감사인을 선택하려는 차별적 감사수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높은 회계발생을 보이는 기업은 자본시장의 평가절하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인을 선택하려는 차별적 감사수요를 가지게 될 것이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회계감사가 정보비대칭성 현상을 감소시켜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기능이 있다면 차

별적 감사수요가 존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먼저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응변수로 하였으며 Big5 제휴 법인과 국내법인 사이에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 결과 Big5 제휴법인은 국내법인과 비교하여 우수한 감사품질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회계발생에 따른 차별적 감사수요를 분석하였는데 분석결과 중소기업의 경우 높은 회계발생액의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저 품질의 감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국내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는 높은 회계발생 기업 일수록 고품질 감사인을 선호 할 것이라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의 회계감사는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Big5 감사인들은 감사품질 차별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자본시장에서 감사품질의 차이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 하였다.

나종길, 최기호(2003)은 산업전문 감사인이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회계감사품질을 제공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감사품질의 대응치로는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결과 산업별 전문화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기업들이 그 외의 기업들에 비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이 낮아서 대체로 회계이익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인 분석에서는 기업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산업별 전문성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기업 규모가 작은 집단에서는 산업별 전문성이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업별 전문감사인의 영향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별화 된다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회계감사시장에서 기업규모가 클수록 산업별 전문 감사인이 높은 품질의 회계감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동 연구는 회계감사시장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산업별 전문감사인별 연구라는 의미가 있지만 회계이익의 질 측정치인 재량적 발생액의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최정호(2005)는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회계제도개선 및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관련성에 관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과 재량적 유동발

생액의 두 가지를 선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에는 회계제도 개선 여부와 감사품질 그리고 그들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변수를 포함하였다. 여기서 회계제도 개선 여부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기간을 전후하여 구분하였다. 회계제도개선 및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액의 정보성과의 관련성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종속변수를 주식수익률과 미래수익성의 두 가지를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에는 회계이익의 구성요소인 영업현금흐름, 재량적 발생액, 비재량적 발생액, 그리고 그들과 회계제도 개선 여부 및 감사품질과의 상호효과에 관한 변수들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회계제도가 개선된 이후 현저히 감소하였지만 Big5가 감사한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은 Non Big5가 감사한 기업과 큰 차이가 없어 감사품질에 따른 재량적 발생액의 크기는 달라지지 않았다. 이는 회계제도 개선이후도 동일하다. 재량적 발생액과 주식수익률 및 미래이익과의 관련성은 회계제도 개선 이후 오히려 낮아졌다. 이는 회계제도 개선 이후에 비교적 보수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져 회계이익의 정보성이 증대 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반대의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감사품질과 주식수익률 및 미래수익성과의 관련성은 관측되지 않아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감사시장에서는 Big5 와 Non Big5간에 감사품질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 하였다.

심한택(2005)는 감사인 유형에 Big6와 Non Big6로 구분하고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재량적 발생액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으로는 1995년부터 2002년까지 총 2,652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감사인 품질에 대한 시장반응차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는 감사인 유형별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 이익반응계수(ERC), 주가에 대한 재량적 발생액의 반응계수 차이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Big6과 Non Big6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절대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본시장의 반응을 나타내는 이익반응계수 및 재량적 발생액의 주가반응계수도 감사인 유형에 따라 체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ig6 감사인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 행위를 제한하지 않으며 외부투자자들도 Big6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추론하지 않음을 시사 하였다.

이효익 등(2002)은 1991년부터 2000년까지 감사인 규모에 따라 감사품질에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품질차이가 외환위기 전·후의 두 시점 간에 어떻게 변화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수주의 회계의 적용관점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Big5 감사인은 일반적으로 높은 손해배상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들의 입장에서는 소송제기의 매력적인 표적이 되고 있다. 따라서 Big5 감사인의 경우 재무제표 오류와 관련한 감사실패 위험을 낮추기 위하여 더욱 많은 감사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도 회계의 이익결정시 보수주의 회계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보수주의 회계적용은 감사인 규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 비하여 외환위기 이후의 기간에 감사인 및 감사대상 기업은 보수주의 회계적용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ig5 감사인 경우 감사실패로 인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Non Big5보다 더욱 강화된 보수주의 성향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노력과 이에 따른 감사실무계의 적극적인 호응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최국현(2007)에서는 대형회계법인(Big5)회계법인과 제휴하고 있는 Big5 감사인과 국내 Local Big 감사인, 기타 감사인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품질을 평가 하였다. 연구 결과 재량적 발생액은 Big5 감사인이 Non Big5 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Big5 감사인과 Local Big 감사인간 재량적 발생액은 제한적인 차이만 존재하였다. 또한 Local Big 감사인을 대형 감사인으로 분류하여 Big5 감사인과 더불어 대형 감사인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에 기타감사인에 비하여 높은 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이는 Local Big 감사인 Big5 감사인에 상응하는 감사품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경우 감사인 유형간 차별적 감사품질을 검증함에 있어 Big5 감사인과 Non Big5 감사인을 사용하는 것보다 국내 감사인의 특성 및 감사시장 실정에 맞는 감사인별 전문성과 독립성을 고려하여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황인태 등(2008)에서는 감사수입비중이 제한적이고, 조직형태에 한계가 있는 감

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의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감사반의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가 다른 회계법인보다 질 높은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피감사기업은 5,000억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그들의 주력감사시장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각 감사인마다 차별화된 주력감사시장이 존재하는 국내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에 따라 최적의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며, 국내 선행연구에서 모든 기업규모에 대하여 Big4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다.



제 3 장 연구의 설계 및 표본의 선정

제 1 절 가설 설정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유형에 따른 감사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의 크기를 실증적으로 분석 하는 것이다.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한다. 회계감사인은 회사가 제시하는 재무제표를 감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만약 부실 감사보고서가 발행된다면 그 파급효과 또한 광범위할 수밖에 없다.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회계법인이며,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공인회계사도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특한 형태로써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의 중간단계인 감사반도 감사인의 한 형태이다. 공인회계사,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정의는 다음 표와 같다 (노준화 2003).

< 표 3-1 > 감사인의 종류

감 사 인	내 용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동안의 연수과정(1,2년)을 거친 후 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회계법인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공인회계사 10인 이상, 공인회계사인 이사 3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감사업체를 말한다.
감사반	감사반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된 감사업체를 말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상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인은 회계법인과 감사반이며, 외감법 제3조 1항에서는 감사인별로 감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주권상장법인의 재무제표, 결합재무제표 및 감사인 지정은 회계

법인만이 감사할 수 있다. 다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지배회사와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종속회사 모두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연결재무제표의 경우에는 감사반도 감사인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사인 조직형태는 1997년 이전까지는 회계법인, 합동회계사무소, 감사반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중간단계로서 존재하였던 합동회계사무소는 감사인의 조직화측면에서 관련 법규의 개정을 통해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회계감사시장의 경쟁력과 회계감사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의 최저자본금을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하하고 공인회계사 수는 20인에서 10인 이상으로 낮추는 등 회계법인의 설립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2001년부터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수가 1,000명으로 대폭 늘어나 2002년 회계법인의 숫자는 전년보다 약 60%가 늘어나게 되었고, 2008년 현재 회계법인의 숫자는 103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03개 회계법인에 속해있는 공인회계사 6,806명, 258개 감사반에 속해있는 공인회계사 1,197명으로 14.96%에 상당하는 공인회계사가 감사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 표 3-2 > 감사인 현황(2008. 12. 31현재)

구 분	회 계 법 인		감 사 반	
	감사인수	구성원수	감사인수	구성원수
100인 이상	8개	4,705명		
50인 이상	6개	404명		
10인 이상	87개	1,697명	6개	70명
10인 미만	2개	18명	252개	1,127명
총 계	103개	6,806명	258개	1,197명

회계법인은 소속공인회계사가 일정규모(현재 10인) 이상이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며, 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매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여야 한다.

한편, 감사반은 3인 이상의 개인공인회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공인회계사는 별개의 장소에서 사무실을 갖고 공인회계사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

으나 외감법에 의해 회계감사를 할 경우에는 감사반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이효익 2008).

< 표 3-3 >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비교

구분	회계법인	감사반
회계사수	10인 이상	3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없음
감사가능회사	모든 회사	상장회사 및 연결·결합 재무제표 그리고 감사인 지정대상회사는 제외
책임범위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는 유한회사)	감사참여 공인회계사가 연대책임

< 표 3-4 >은 2008년 12월 31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을 두고 있는 피감사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법인별 피감사 회사의 분포를 조사한 표이다.

< 표 3-4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감사인별 제주도내 피감사 회사 수

등록일자	구성원 수	감사인명	피감사회사수	비율
1971.03.21	1,957	삼일회계법인*	9	11.1%
1994.03.28	643	삼정회계법인*	3	3.7%
1987.02.14	918	안진회계법인*	3	3.7%
1982.03.25	526	한영회계법인*	2	2.5%
1970.01.13	169	신한회계법인	9	11.1%
2007.08.22	10	진성회계법인	1	1.2%
1995.02.16	206	대주회계법인	6	7.4%
1976.08.19	186	삼덕회계법인	2	2.5%
2004.03.25	15	청안회계법인	4	4.9%
		기타회계법인	15	18.5%
1994.11.07	4	162호감사반	11	13.6%
1996.10.28	6	229호감사반	13	16.0%
		기타감사반	3	3.7%
합계			81	100%

* Big 4

< 표 3-4 >에서 보는 바와 같이 Big4와 제휴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17개, 기타회계법인의 피감사 회사 수는 37개 그리고 감사반의 피감사 회사 수는 27개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사인 규모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요인을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감사품질은 감사인의 크기와 명성에 따라서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Dopuch & Simunic (1932)은 Big6(현재는 Big4)감사인은 Non Big6 감사인보다 특별훈련과 상호감리(peer reviews)를 많이 실시하기 때문에 감사 품질이 높다고 주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훈련과 품질관리 등을 강화하여 감사인의 전문성을 유지하며 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실시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나 감사반은 조직형태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회계법인과 달리 감사반의 경우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평소에는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할 일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다보니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또한, 감사반의 경우 법인과는 달리 조직을 이루지 않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책임소재를 따질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황인태 등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추론해 보면 감사반의 경우 총수입에서 감사로 인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고 조직구조상 한계로 인하여 감사품질이 회계법인에 비하여 떨어진다고 추론되어 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연구가설]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감사인의 규모와 감사품질은 정 (+)의 상관관계에 있다.

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감사인 규모를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 제휴하고 있는 Big4, Big4 이 외의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으로 구분하였다. 감사품을 대리하는 변수로는 회계이익에 대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다. 회계이익에는 경영자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발생항목이 포함된다. 이러한 재량적 발생은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경영자의 사적 정보(private information)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포함된 회계이익의 정보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재량적 발생은 경영자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은 회계정보로서 긍정적인 역할(경영자의 사적 정보전달)과 함께 부정적인 역할(이익조정에 의한 잡음)도 수행한다(Healy & Palepu 1993). 재량적 발생은 경영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외부이용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할 수 없다. 재량적 발생의 금액이 많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측정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으며, 감사위험도 그 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은 이익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억제시킬 목적으로 감사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 의해서 많은 선행연구(Francis et al. 2002)는 회계정보, 특히 이익의 질(quality of earnings)을 측정하기 위한 대용변수로서 재량적 발생을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다음의 5가지 가설을 설정한다.

[가설 1]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 2]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 3]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4]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가설5]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고 있는 Big4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다.

제 2 절 연구 모형

3.2.1. 감사품질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감사품질을 대리하는 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한다. 재량적 발생액은 경영자의 추정과 특정 회계방법의 선택으로 그 금액이 결정된다.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현금흐름과 총 발생액의 합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총 발생액은 당기순이익에서 영업활동으로부터 조달된 현금흐름을 차감한 것이 된다. 경영자가 주어진 현금흐름을 조정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결국 이익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총 발생액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건드릴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총 발생액 변동은 경영자가 조정을 하는 자의적 변동부분과 경영자의도와 관계없이 저절로 변동되는 비자의적 변동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 있는 수치를 제공하는 자의적 변동부분도 매출액의 증감 및 유형고정자산의 증감에 따른 변동은 정상적으로 예상된다.

경영자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의 지속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미래 수익성 등에 대한 사적 정보를 신호하기도 하며(Subramanyam 1996), 특정 상황이나 다양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 기회주의적인 목적으로 재량적 발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재량적 발생액은 경영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불확실성이 높으며 객관적인 검증이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연구에서 경영자의 이익조정행위를 검증하기 위해서 재량적 발생액을 대용변수로 이용하여 왔다. 그러나 재량적 발생액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 오차를 피할 수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이 제시되어 왔으며 수정 Jones 모형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수정된 Jones 모형을 이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한 후 이를 이용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1)과 같다. 재량적 발생액은 식(1)의 회귀모형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잔차항을 의미한다.⁵⁾

수정 Jones 모형 $DA1$:

$$TA_{it}/A_{it-1} = \beta_0 + \beta_1((\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beta_2(PPE_{it}/A_{it-1}) + \xi_{it} \dots \dots \dots (1)$$

위 식에서

TA_{it} : 기업 i의 t년도 발생액(Accruals=NI-CFO)

A_{it-1} : t-1 기말의 총자산 장부가액

ΔREV_{it} : t 기간의 매출액변동

ΔAR_{it} : t 기간의 매출채권변동

PPE_{it} : t 시점 설비자산 장부가액

ξ_{it} : 각 회귀식의 오차항

추정모형2는 수정된 Jones 모형에서 TA_{t-1} 를 통제하여 재량적 발생액을 측정하였다. Dechow et al.(2003), Phillips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수정된 Jones 모형을 다시 보완하여 전향적인 모형(Forward-looking model)로 설계하였는데 위 모형에서는 독립변수에 TA_{t-1} 를 포함되었다. 이는 TA_t 가 TA_{t-1} 의 영향으로 반전가능성이 높은 시계열 특성이 있어서 이를 통제하기 위함이다.

동일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도 수정 Jones 모형의 독립변수에 TA_{t-1} 를 추가하여 재량적 발생액의 추정모형2를 설계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형은 다음 식(2)과 같다.

TA_{t-1} 추가모형 $DA2$:

$$TA_{it}/A_{it-1} = \beta_0 + \beta_1((\Delta REV_{it} - \Delta AR_{it})/A_{it-1}) + \beta_2(PPE_{it}/A_{it-1}) + \beta_3(TA_{it-1}/A_{it-1}) + \xi_{it} \dots \dots \dots (2)$$

위 식에서

TA_{it-1} : 기업 i의 t-1년도 발생액

5) 식 (1)에서 좌변의 총 발생액 중 연도별·산업별로 추정된 우변의 비재량적 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잔차항이 재량적 발생액이다.

3.2.2. 연구 모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전에 감사품질과 재량적 발생의 크기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같이 감사품을 이원화하여 다변량분석을 실시한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에 의한 다변량분석 결과가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지를 검증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을 통해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석을 위한 모형설계는 다음과 같다.

$$DA_{it} = \beta_1 + \beta_2 AUDITSIZE_{it} + \beta_3 OCF_{it} + \beta_4 ABSTAC_{it} + \beta_5 OPN_{it} + \beta_6 SIZE_{it} + \beta_7 DEBT_{it} + \beta_8 LIQUID_{it} + \beta_9 ROA_{it} + \beta_{10} LOSS_{it} + \beta_{11} CHGSALE_{it} + \xi_{it} \dots\dots\dots(3)$$

여기서,

$DA1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2_{it}$: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 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AUDIT SIZE_{it}$: 감사인 규모 더미변수 (대형회계법인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OCF_{it} : 영업현금흐름/전년도총자산

$ABSTAC_{it}$: 총 발생액의 절대값/전년도총자산

OPN_{it} : t년도 감사의견 (감사의견이 적정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SIZE_{it}$: t년도 기업규모 (자산총액의 로그값)

$DEBT_{it}$: t년도 부채비율 (부채총액/자기자본)

$LIQUID_{it}$: t년도 총자산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ROA_{it} : t년도 총자산영업이익률 (영업이익/총자산)

$LOSS_{it}$: t년도 순손실이 발생된 기업이면 1, 아니면 0

$CHGSALE_{it}$: t년도 매출액증가율(당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

위의 식은 2개의 재량적 발생액 추정모형에 의해 계산된 $DA1$, $DA2$ 을 종속변수로 하여, 영업현금흐름외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9개의 변수들을 통제하면서 감사인규모($AUDIT\ SIZE_{it}$) 더미에 회귀한 것이다.⁶⁾ [가설 1]~[가설 5]를 검증하기 위하여 ($AUDIT\ SIZE_{it}$)는 다음과 같이 세분화되어 정의된다.

가설 1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그렇지 않으면 0

가설 2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기타회계법인이면 0

가설 3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4의 검증 : $AUDIT\ SIZE_{it}$ - 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가설 5의 검증 : $AUDIT\ SIZE_{it}$ - Big4+기타회계법인이면 1, 감사반이면 0

만약 대규모 감사인이 경영자가 다양한 경제적 동기에 의해 기회주의적인 재량적 회계선택을 제한한다면, 가설에 따른 $AUDIT\ SIZE_{it}$ 의 기대부호는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본 연구의 실험변수 $AUDIT\ SIZE_{it}$ 가 감사품질변수인 DA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감사인 규모 의외에도 일반적으로 감사품질 DA 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모형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다음의 몇 가지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최성규, 김경민(2004)에 의하면 경영자가 기업투자, 생산, 영업활동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량적 발생액과 발생의 기간별 역전현상으로 생기는 재량적 발생액을 종속변수에서 제거하는 것이 이익조절의 검증력을 높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Jeter and Shivakumar (1999), Dechow et al (1995), Kasznik (1999)은 재량적 발생액이 현금흐름수준에 따라 체계적인 편이가 포함됨을 보고 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업현금흐름 OCF_{it} 을 연구모형에 포함하였으며, 기대값은 음(-)의 부호가 된다. 재량적 발생액과 총 발생액 사이에는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

6) $DA1_{it}$: 수정 Jones 모형에 의해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2_{it}$: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 를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Becker et al. 1999)가 보고되어 ABSTAC(총 발생액)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또한 기업규모통제를 위하여 총자산에 Log를 취한 $SIZE_{it}$ 를 추가하였다. Becker et al.(1998)은 재량적 발생액이 기업시스템 및 내부통제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다. 또 다른 근거로는 재무분석가나 투자자와 같은 정보 이용자들은 대규모 기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회계보고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감시하기 때문에 이익조정행위가 억제된다는 이론을 들 수 있다(Zhou and Elder 2003). 따라서 경영자의 회계적 재량권 행사여지가 적을 것이므로 음(-)의 부호가 예상된다. $DEBT_{it}$ 는 부채비율로서 DeFond and Jiambalvo(1994)와 Sweeney (1994)는 경영자는 부채계약조항을 준수하기 위해서 재량적 발생을 통하여 이익을 상향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술적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보고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재량적 회계선택을 할 유인이 있다.7) 따라서 종속변수를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으므로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ROA_{it} 는 기업의 자산수익률이 낮을 경우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높게 평가하여 더 보수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게 될 것이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으며, 예측부호로는 양(+)의 부호가 예상된다. $LOSS_{it}$ 는 당해연도의 당기순손실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Burgstahler and Dichev(1997)는 기업은 손실의 발생이나 이익의 감소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익을 상향조정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 바 있어 당기순손실여부를 모형에 포함시켰다. 변수의 기댓값은 양(+)의 부호가 된다. $CHGSALE_{it}$ 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한 변수로서 윤순석(2001)은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는 보고이익을 증가시킬 유인이 높다고 보아 한바 있다. OPN_{it} 는 당해연도 감사의견으로 감사위험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모형에 포함시켰다. 감사의견과 관련하여 적정감사의견의 기업은 재량적 회계선택의 크기가 작을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문현주 2001).

7) 그러나 DeAngelo et al.(1994)는 재무적 곤경에 당면한 기업은 재협상계약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할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이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또한 최성규, 김경민(2004)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비율은 계약과정이 아닌 정치과정이 보다 타당하므로 보고이익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회계선택을 할 유인이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

3.2.3. 연구 표본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감사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표본기업이 선정되었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을 이용하여 감사인을 확인하고,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를 통해 재무자료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이며, 구체적인 표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조사기간에 제주지역에 본사를 둔 감사대상 기업 중 12월말 결산법인
- (2)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 제외
- (3) 회계자료의 이용이 가능한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III를 통해 재무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12월말 법인을 이용한 이유는 재무제표정보와 관련하여 표본의 동질성을 높이고, 다른 연구와의 비교분석상의 편의를 위함이다.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이유는 금융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제정도와 영업환경이 다르고, 일반 기업과는 재무제표의 구성항목과 의미가 상이하여 동질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증분석을 위한 자료의 이용가능성 때문에 회계자료를 구할 수 없는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최종 표본은 총 332개 기업/연도가 선정되었다.

전체 제주도내기업 (12월 결산법인,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제외)	357
감사미필기업 및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25)
최종 선정기업	332

< 표 3-5 > 감사인별, 연도별 최종 표본기업 수

	2004	2005	2006	2007	2008	합계	비율
Big 4	10	11	14	18	17	70	21.1%
기타회계법인	27	28	33	32	37	157	47.3%
감사반	15	17	19	27	27	105	31.6%
합 계	52	56	66	77	81	332	100%

주1) Big4 회계법인은 삼일, 한영, 삼정, 안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 표 3-5 >는 기업 332개에 대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감사인별 분포를 보여준다. 표본기업에 대한 감사인 수는 총 23개이며 그 중 Big4에 총 4개의 감사인이, 기타회계법인에 15개의 감사인이 그리고 감사반에 5개의 감사인이 포함되었다. 이 중 Big4가 차지하는 비율은 21.1% (70 개)이며, 기타회계법인은 47.3% (157개), 감사반은 31.6% (105개)로 나타났다. 위의 연도별, 감사인별 표본 구성으로 볼 때 5개의 감사인으로 구성된 감사반(105개, 31.6%)이 4개의 감사인으로 구성된 대형회계법인 (70개, 21.1%)보다 많은 표본수를 나타내고 있어, 감사반의 감사시장 점유율이 대형회계법인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4 장 실증분석의 결과 및 해석

제 1 절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

4.1.1.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연구모형 추정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은 각 가설에 따라 5가지의 감사인 유형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각 가설에 의한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표 4-1 >는 Big4와 Non Big4의 기술통계량과 t-test에 의한 차이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DA1, DA2의 p값이 각각 0.642, 0.731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와 Non Big4를 통제변수들 간의 차이를 보면 기업규모($t=9.459$, $p<0.001$), 총자산영업이익률($t=-2.607$, $p=0.010$)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증가율($t=1.858$, $p=0.064$)이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 총 발생액, 감사의견, 부채비율, 유동비율 그리고 당기순손실여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1 > Big4와 Non Big4 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변수 ⁸⁾	Big4 (N=70)		Non Big4 (N=262)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DA1	-0.091	0.237	-0.072	0.307	-0.466	0.642
DA2	-0.081	0.231	-0.067	0.312	-0.344	0.731
OCF	0.020	0.194	0.036	0.295	-0.440	0.660
ABSTAC	0.115	0.195	0.130	0.245	-0.463	0.644
OPN	0.900	0.302	0.943	0.232	-1.277	0.203
SIZE	10.904	0.437	10.412	0.373	9.459	0.000
DEBT	3.950	7.433	8.652	24.531	-1.255	0.211
LIQUID	2.512	3.799	42.555	6.06	-0.983	0.326
ROA	-2.056	19.88	1.748	9.88	-2.607	0.010
LOSS	0.614	0.490	0.505	0.500	1.617	0.107
CHGSALE	4.798	25.289	1.431	2.178	1.858	0.064

8)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t-1} 통제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 표 4-2 >는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기술통계량과 t-test에 의한 차이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DA1, DA2의 p값이 각각 0.970, 0.876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통제변수들 간의 차이를 보면 기업규모($t=8.533$, $p<0.001$)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t=-1.891$, $p=0.060$)이 10%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 총 발생액, 감사의견,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기순손실여부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2 >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변수 ⁹⁾	Big4 (N=70)		기타회계법인 (N=157)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DA1	-0.091	0.237	-0.093	0.367	0.038	0.970
DA2	-0.081	0.231	-0.088	0.374	0.157	0.876
OCF	0.020	0.194	0.036	0.345	-0.376	0.707
ABSTAC	0.115	0.195	0.147	0.304	-0.818	0.414
OPN	0.900	0.302	0.936	0.244	-0.957	0.339
SIZE	10.904	0.437	10.449	0.337	8.533	0.000
DEBT	3.950	7.433	6.863	15.640	-1.179	0.240
LIQUID	2.512	3.799	59.308	42.931	-1.105	0.270
ROA	-2.056	19.88	1.105	9.812	-1.891	0.060
LOSS	0.614	0.490	0.509	0.501	1.463	0.145
CHGSALE	4.798	25.289	1.368	1.779	1.458	0.147

9)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t-1} 통제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 표 4-3 >는 Big4와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t-test에 의한 차이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DA1, DA2의 p값이 각각 0.127, 0.149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와 감사반의 통제변수들 간의 차이를 보면 기업규모($t=8.383$, $p<0.001$)와 총자산영업이익률($t=-2.654$, $p=0.009$)이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 총 발생액, 감사의견,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기순손실여부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3 > Big4와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변수 ¹⁰⁾	Big4 (N=70)		감사반 (N=105)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DA1	-0.091	0.237	-0.042	0.182	-1.533	0.127
DA2	-0.081	0.231	-0.035	0.183	-1.450	0.149
OCF	0.020	0.194	0.036	0.198	-0.531	0.596
ABSTAC	0.115	0.195	0.103	0.104	0.518	0.605
OPN	0.900	0.302	0.952	0.214	-1.342	0.181
SIZE	10.904	0.437	10.356	0.414	8.383	0.000
DEBT	3.950	7.433	11.429	33.992	-1.435	0.154
LIQUID	2.512	3.799	17.504	115.672	-1.083	0.280
ROA	-2.056	19.88	2.710	8.830	-2.654	0.009
LOSS	0.614	0.490	0.500	0.502	1.486	0.139
CHGSALE	4.798	25.289	1.520	2.651	1.166	0.245

10)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it-1} 통제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 표 4-4 >는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DA1, DA2의 p값이 각각 0.193, 0.178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통제변수들 간의 차이를 보면 기업규모($t=1.996$, $p=0.047$)가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 총 발생액, 감사의견, 부채비율, 유동비율, 총자산영업이익률, 당기순손실여부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4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변수 ¹¹⁾	기타회계법인 (N=157)		감사반 (N=105)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DA1	-0.093	0.367	-0.042	0.182	-1.306	0.193
DA2	-0.088	0.374	-0.035	0.183	-1.352	0.178
OCF	0.036	0.345	0.036	0.198	0.012	0.990
ABSTAC	0.147	0.304	0.103	0.104	1.431	0.154
OPN	0.936	0.244	0.952	0.214	-0.547	0.585
SIZE	10.449	0.337	10.356	0.414	1.996	0.047
DEBT	6.863	15.640	11.429	33.992	-1.189	0.236
LIQUID	59.308	42.931	17.504	115.672	0.974	0.331
ROA	1.105	9.812	2.710	8.830	-1.350	0.178
LOSS	0.509	0.501	0.500	0.502	0.151	0.880
CHGSALE	1.368	1.779	1.520	2.651	-0.481	0.631

11)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it-1} 통제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 표 4-5 >는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결과를 제시한다. 감사인의 질을 대리하는 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은 DA1, DA2의 p값이 각각 0.150, 0.147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통제변수들 간의 차이를 보면 기업규모($t=4.684$, $p<0.001$)가 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자산영업이익률($t=-2.009$, $p=0.045$)이 5% 수준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영업현금흐름, 총 발생액, 감사의견, 부채비율, 유동비율, 당기순손실여부 그리고 매출액증가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4-5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기술통계량과 차이분석

변수 ¹²⁾	Big4+기타회계법인 (N=227)		감사반 (N=105)		t-test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DA1	-0.092	0.331	-0.042	0.182	-1.444	0.150
DA2	-0.085	0.335	-0.035	0.183	-1.454	0.147
OCF	0.031	0.306	0.036	0.198	-0.142	0.887
ABSTAC	0.137	0.275	0.103	0.104	1.231	0.219
OPN	0.925	0.263	0.952	0.214	-0.927	0.354
SIZE	10.436	0.399	10.356	0.414	4.684	0.000
DEBT	7.514	24.086	11.429	33.992	-1.669	0.097
LIQUID	3.472	5.69	17.504	115.672	0.679	0.497
ROA	4.748	12.951	2.710	8.830	-2.009	0.045
LOSS	0.262	0.441	0.500	0.502	0.706	0.480
CHGSALE	2.511	14.677	1.520	2.651	0.606	0.545

12)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it-1} 통계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4.1.2. 상관관계 분석

< 표 4-6 >에서는 다변량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와 Spearman 상관계수를 제시한다. Pearson 상관관계분석에서 DA1은 OCF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DEBT와는 유의하지 않았고,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DA1은 OCF 와 LOSS 및 CHGSALE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Pearson 상관관계와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DA1은 ABSTAC, ROA와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DA2는 Pearson 상관관계분석에서 LIQUID와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DA2는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OCF와 LOSS 및 CHGSALE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DA2는 Pearson 상관관계와 Spearman 상관관계분석에서 OCF, ABSTAC, ROA, CHGSALE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재량적 발생액 관련 선행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단순 상관관계분석이므로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과 함께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여 검증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외 통제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변수인 LOSS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OCF, ROA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13)

13) 표에서 오른쪽 상단부분은 PEARSON 상관계수이고 왼쪽 하단부분은 SPEARMAN 상관계수이다.

< 표 4-6 >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14)

변수	DA1	DA2	OCF	ABS TAC	OPN	SIZE	DEBT	LIQUI D	ROA	LOSS	CHGS ALE
DA1	1	.996** .000	-.582** .000	.970** .000	.060 .275	-.030 .582	.001 .993	.014 .796	.121* .028	-.123* .026	-.019 .768
DA2	.982 .000	1	-.800** .000	.968** .000	.066 .232	-.033 .547	-.003 .963	.013 .816	.120* .030	-.122* .027	.005 .936
OCF	-.582** .000	-.571** .000	1	-.841** .000	.035 .527	-.036 .228	-.103 .134	-.011 .844	.230** .000	-.201** .000	-.020 .749
ABS TAC	.992** .000	.991** .000	-.661** .000	1	.075 .173	-.018 .750	.015 .825	.018 .746	.123* .025	-.118* .032	-.002 .974
OPN	-.041 .461	-.035 .528	.039 .207	-.039 .484	1	.004 .937	-.021 .761	.029 .536	.167** .002	-.082 .137	-.309** .000
SIZE	.005 .934	-.002 .976	-.230** .000	.046 .406	.014 .803	1	.042 .539	-.089 .107	-.207** .000	.254** .000	.091 .145
DEBT	-.032 .364	-.091 .186	-.191** .005	.002 .977	-.105 .123	.018 .797	1	-.037 .502	-.126 .037	.220** .001	-.016 .824
LIQUI D	.181** .001	.183** .001	.196** .000	.002 .005	.100 .068	-.120* .029	-.772** .000	1	-.011 .838	-.072 .190	-.029 .649
ROA	.117* .034	.119* .031	.448** .000	.088 .109	.166** .002	-.356** .000	-.146** .033	.345** .000	1	-.514** .000	-.033 .336
LOSS	-.143** .009	-.144** .009	-.394** .000	-.107 .051	-.082 .137	.295** .000	.135* .048	-.414** .000	-.757** .000	1	.078 .216
CHGS ALE	-.258** .000	-.269** .000	.076 .224	-.062 .322	-.147* .018	.039 .344	.097 .182	-.032 .610	.084 .182	-.083 .185	1

14) DA1, DA2 : 각각 수정 Jones모형, TA_{it-1} 통계 모형, OCF : 영업현금흐름, ABSTAC : 총 발생액, OPN : 감사의견, SIZE : 기업규모 (Log 총자산), DEBT : 부채비율, LIQUID : 유동비율, ROA : 총자산 영업이익률, LOSS : 당기순손실여부, CHGSALE : 매출액증가율.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본 절에서는 연구가설의 검증을 위하여 감사품질의 대리변수인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변수를 통제한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4.2.1. 가설 1 - Big4와 Non Big4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1]의 검증을 위해 Big4와 Non Big4를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 표 4-7 >에 보고한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에서는 Non Big4의 DA1과 DA2의 평균이 Big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7 >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그렇지 않은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국내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¹⁵⁾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Non Big4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중 영업현금흐름 변수인 OCF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도 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¹⁶⁾ 총 발생액변수인 ABSTAC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자가 기업의 투자, 영업, 생산 활동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량적 발생액과 발생의 기간별 역전현상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인

15) 나종길과 최기호(2001), 박용철과 심한택 (2001), 나종길과 최관 (2003), 심한택 (2005)

16) Dechow et al.(1995), Guay et al.(1996), Becker et al.(1998), Jeter and Shivakumar (1999), Hwang et al. (2005), 나종길과 최정호 (2000), 박종일 (2005)

ABSTAC 또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 변수인 CHGSALE는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은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감사의견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와 부채비율 DEBT은 예상한 바와 달리 음(-)의 값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ROA는 < 모형1 >과 < 모형2 >에서 각각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Kothari et al. 2005).¹⁷⁾ 당기순손실 여부에 대한 변수인 LOSS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 R^2 는 < 모형1 >, < 모형2 > 각각 0.419, 0.408 이며 모형의 적합성은 두 모형 모두 유의도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인 유형(Big4와 Non Big4)에 따라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의 값에 체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Non Big4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1]을 지지하고 있지 않다.

17) Kothari et al.(2005)은 Jones 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은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기업의 경우 재량적 발생액이 크게 측정됨을 지적한 바 있다. ROA를 연구모형에 포함한 것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 표 4-7 > Big4와 Non Big4 의 회귀분석 결과¹⁸⁾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23	-0.014
		-(0.601)	-(0.353)
OCF (영업현금흐름)	-	-0.132	-0.139
		-(2.761)***	-(2.726)***
ABSTAC (총발생액)	-	0.018	0.027
		(0.494)	(0.727)
OPN (감사의견)	-	-0.016	-0.008
		-(0.481)	-(0.229)
SIZE (기업규모)	+	-0.001	-0.009
		-(0.035)	-(0.224)
DEBT (부채비율)	+	-0.013	-0.016
		-(0.386)	-(0.461)
LIQUID (유동비율)	-	0.073	0.071
		(2.238)**	(2.143)**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92	0.194
		(5.429)***	(5.403)***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6	-0.148
		-(3.970)***	-(3.966)***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6	-0.159
		-(4.696)***	-(4.735)***
수정 R^2 (F-값)		0.419	0.408
		(12.348)***	(12.125)***

18)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2.2. 가설 2 -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2]의 검증을 위해 Big4와 기타회계법인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 표 4-8 >에 보고한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에서는 기타회계법인의 DA1과 DA2의 평균이 Big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8 >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t-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국내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통제변수들 중 영업현금흐름 변수인 OCF는 DA1, DA2에서 각각 유의도 10%, 5%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Dechow et al.1995, Guay et al.1996, Becker et al. 1998, Jeter and Shivakumar 1999, Hwang et al. 2005, 나종길과 최정호 2000, 박종일 2005). 총 발생액변수인 ABSTAC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경영자가 기업의 투자, 영업, 생산 활동의 결과를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량적 발생액과 발생의 기간별 역전현상을 통제하기 위한 변수인 ABSTAC는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성규와 김경민 2004). 성장성 변수인 CHGSALE는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은 예상한 바와 달리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는 예상한 바와같이 음(-)의 값이 나왔으며, 부채비율 DEBT은 예상한 바와 달리 음(-)의 값이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ROA는 < 모형1 >과 < 모형2 >에서 각각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당기순손실 여부에 대한 변수인 LOSS는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 R^2 는 < 모형1 >, < 모형2 > 각각 0.492, 0.481 이며 모형의 적합성은 두 모형 모두 유의도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인 유형(Big4와 기타회계법인)에 따라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의 값에 체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Big4와 기타회계법인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2]를 지지하고 있지 않다.

< 표 4-8 > Big4와 기타회계법인결과¹⁹⁾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15 -(0.374)	-0.002 -(0.054)
OCF (영업현금흐름)	-	-0.067 -(1.821)***	-0.080 -(2.012)***
ABSTAC (총발생액)	-	0.012 (0.303)	0.018 (0.436)
OPN (감사의견)	-	0.020 (0.607)	0.018 (0.563)
SIZE (기업규모)	+	0.035 (0.898)	0.028 (0.718)
DEBT (부채비율)	+	-0.033 -(0.939)	-0.033 -(0.961)
LIQUID (유동비율)	-	0.029 (0.853)	0.031 (0.924)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58 (4.455)***	0.161 (4.535)***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82 -(4.846)***	-0.186 -(4.959)***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88 -(5.709)***	-0.187 -(5.672)***
수정 R^2 (F-값)		0.492 (13.198)***	0.481 (13.045)***

19)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2.3. 가설 3 -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3]의 검증을 위해 Big4와 감사반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표 < 4-9 >에 보고한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에서는 감사반의 DA1과 DA2의 평균이 Big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9 >은 감사인 유형이 Big4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t-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가설 3]을 지지하고 있어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4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중 영업현금흐름 변수인 OCF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도 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총 발생액변수인 ABSTAC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도 1%수준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 변수인 CHGSALE는 모두 5%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은 모두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와 부채비율 DEB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레버리지를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LIQUID가 모두 유의수준 5%에서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회계선택 행위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지 않는다. ROA는 < 모형1 >과 < 모형2 >에서 모두 5%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당기순손실 여부에 대한 변수인 LOSS는 모두 통계적으로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 R^2 는 < 모형1 >, < 모형2 > 각각 0.393, 0.388 이며 모형의 적합성은 두 모형 모두 유의도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인 유형(Big4와 감사반)에 따라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TA_{t-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의 값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Big4와 감사반으로 구분한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9 > Big4와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²⁰⁾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168 -(1.769)*	-0.160 -(1.667)*
OCF (영업현금흐름)	-	-0.181 -(3.065)***	-0.180 -(2.774)***
ABSTAC (총발생액)	-	0.324 (5.017)***	0.339 (5.194)***
OPN (감사의견)	-	-0.048 -(0.681)	-0.030 -(0.426)
SIZE (기업규모)	+	0.135 (1.463)	0.124 (1.320)
DEBT (부채비율)	+	0.024 (0.356)	0.015 (0.218)
LIQUID (유동비율)	-	0.179 (2.620)**	0.166 (2.391)**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65 (2.365)**	0.170 (2.402)**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246 -(3.359)***	-0.233 -(3.135)***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72 -(2.363)**	-0.181 -(2.458)**
수정 R^2 (F-값)		0.393 (11.889)***	0.388 (11.545)***

20)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2.4. 가설 4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4]의 검증을 위해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 표 4-10 >에 보고한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분석에서는 감사반의 DA1과 DA2의 평균이 기타회계법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10 >은 감사인 유형이 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각각 5%, 10%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4]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중 영업현금흐름 변수인 OCF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도 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총 발생액변수인 ABSTAC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 변수인 CHGSALE는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은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와 부채비율 DEB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ROA는 < 모형1 >과 < 모형2 >에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당기순손실 여부에 대한 변수인 LOSS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 R^2 는 < 모형1 >, < 모형2 > 각각 0.623, 0.613 이며 모형의 적합성은 두 모형 모두 유의도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사인 유형(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에 따라 수정 Jones 모형에 의한 재량적 발생액과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의 값에 체계적인 차이가 나타나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으로 구분한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 표 4-10 >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²¹⁾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74	-0.083
		-(2.595)**	-(2.835)***
OCF (영업현금흐름)	-	-0.235	-0.246
		-(2.803)***	-(2.747)***
ABSTAC (총발생액)	-	0.003	0.014
		(0.106)	(0.424)
OPN (감사의견)	-	-0.027	-0.016
		-(0.944)	-(0.553)
SIZE (기업규모)	+	-0.023	-0.023
		-(0.736)	-(0.692)
DEBT (부채비율)	+	-0.021	-0.025
		-(0.734)	-(0.839)
LIQUID (유동비율)	-	0.092	0.089
		(3.316)***	(3.125)***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258	0.255
		(8.030)***	(7.661)***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029	-0.039
		-(0.877)	-(1.121)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8	-0.163
		-(5.496)***	-(5.486)***
수정 R^2 (F-값)		0.623	0.613
		(16.865)***	(16.202)***

21)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4.2.5. 가설 5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

[가설 5]의 검증을 위해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한 회귀분석 결과를 < 표 4-11 >에 보고한다. 연구모형의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량 및 차이 분석에서는 감사반의 DA1과 DA2의 평균이 Big4+기타회계법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 표 4-11 >은 감사인 유형이 Big4+기타회계법인인 기업은 “1”, 감사반인 기업은 “0”으로 표시한 감사인 유형변수 AUDIT SIZE가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AUDIT SIZE가 DA1과 DA2에 미치는 영향은 예상한 바와 같이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수정 Jones모형에 의해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인 DA1과, 수정 Jones 모형에서 TA_{i-1} 을 통제한 재량적 발생액 DA2의 결과는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재량적 발생액에 차이가 있다는 [가설 5]를 지지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연구모형에 포함된 통제변수들 중 영업현금흐름 변수인 OCF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도 1%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영업현금흐름이 많은 기업일수록 이익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재량적 발생액을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많은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총 발생액변수인 ABSTAC는 DA1, DA2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성장성 변수인 CHGSALE는 1%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감사의견을 나타내는 OPN은 예상한 바와 같이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다. 기업규모를 나타내는 SIZE와 부채비율 DEBT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ROA는 < 모형1 >과 < 모형2 >에서 모두 1%수준에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당기순손실 여부에 대한 변수인 LOSS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연구모형의 수정 R^2 는 < 모형1 >, < 모형2 > 각각 0.582, 0.569 이며 모형의 적합성은 두 모형 모두 유의도 1%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Big4와 Non Big4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또한 Big4와 기타회계법인과 비교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 재량적 발생액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Big4와 감사반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도 5%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한 결과도 유의도 5% 수준에서 음(-)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을 비교에서도 유의적인 음(-)의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회계법인과 감사반의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효과는 감사인 규모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인을 감사반으로 확장하여 감사인의 품질을 비교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의도를 부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표 4-11 > Big4+기타회계법인과 감사반의 회귀분석 결과²²⁾

독립변수	예상부호	모형1	모형2
		DA1	DA2
AUDIT SIZE (감사인 규모)	-	-0.092 -(2.693)***	-0.098 -(2.861)***
OCF (영업현금흐름)	-	-0.146 -(3.081)***	-0.155 -(3.062)***
ABSTAC (총발생액)	-	0.028 (0.780)	0.038 (1.029)
OPN (감사의견)	-	-0.016 -(0.500)	-0.009 -(0.273)
SIZE (기업규모)	+	0.018 (0.514)	0.018 (0.500)
DEBT (부채비율)	+	-0.023 -(0.712)	-0.028 -(0.847)
LIQUID (유동비율)	-	0.079 (2.462)**	0.077 (2.389)**
ROA (총자산영업이익률)	+	0.189 (5.475)***	0.190 (5.429)***
LOSS (당기순손실여부)	+	-0.145 -(4.028)***	-0.147 -(4.018)***
CHGSALE (매출액증가율)	+	-0.159 -(4.920)***	-0.164 -(5.014)***
수정 R^2 (F-값)		0.582 (15.324)***	0.569 (15.019)***

22) *,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유의함. 괄호속의 수치는 회귀계수의 t-값이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제 1 절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감사인 유형은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와 Big4와의 회계법인 그리고 감사반으로 구분하였다. 연구의 표본은 제주도내 본사를 둔 기업 중에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2월말 결산 기업 중에서 은행 및 금융관련 기업들을 제외한 기업들 중 실증분석에 필요한 재무자료 및 시장관련 자료의 수집이 가능한 기업들을 선정하였다.

국내외의 많은 연구는 감사인의 규모를 근거로 감사인 규모집단별 차별적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의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외국의 거의 모든 연구에서는 Big 감사인이 Non Big 감사인에 비하여 고품질의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 비하여 국내 연구들은 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지 않다.

본 연구결과 감사인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하여 감사반으로 확대하여 감사품질의 차이 분석에서 감사인조직의 성격이나 규모가 이질적인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감사반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 달리 본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업무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기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할 감사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되어 같은 감사반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은 국내와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내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을 달리 하여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평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도내 입주기업들에게는 감사인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에게는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도내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감사인 품질에 대한 대용치로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는데 재량적 발생액이 감사품을 얼마나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한계점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지적 된 바와 같이 재량적 발생액에는 항상 추정오류가 내포되기 마련이다. 비록 이러한 추정 오류를 경감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발생액 통제모형을 사용하였지만 그렇다 해도 이러한 문제가 100% 해결 될 수는 없다.

두 번째로, 표본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내 기업으로 한정하여 근본적으로 표본수가 적었다. 또한 도내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함에 있어서 감사인 규모보다는 학연 및 지연 등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감사인 유형별로 감사품질의 차별성을 측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모형에 사용한 통제변수 이 외에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변수들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선행연구에서처럼 초도감사여부, 감사인 지정여부, 감사위원회 설치여부, 대주주지분을 등을 통제변수로 추가하여 모형을 설계하였다면 더욱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표본이 확보되도록 국내 감사시장으로 확대하고 연구모형을 좀 더 보완하여 감사인 유형별 감사품질의 변화를 측정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문철, 황인태. 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1-26.
- 나종길,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51-90.
- 나종길, 최관. 2003. 회계발생액과 차별적 감사수요. 회계학연구 제28권 제1호: 1-31.
- 노준화, 배길수, 조성하. 2004. 감사인 유지제도가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9권 제1호: 207-230.
- 노준화, 배길수, 전영순. 2003. 지정 감사인이 더 높은 감사보수를 받는가?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177-202.
- 문현주. 2001. 한정감사의견기업의 이익관리 검증. 한국경영학회 2001 12월: 189-212.
- 박용철. 1998. 한정감사의견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제13권 제2호.
- 박종일, 이명근, 원형연. 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분석.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289-379.
- 박종일. 2005. 감사보수와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42호.
- 심한택. 2005. 감사인 유형별 회계이익과 재량적 발생에 대한 시장반응차이. 회계와 감사연구 제40호: 160-180.
- 이상수. 1999. 감사품질과 감사인의 보수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4권 제3호: 53-80.
- 이효익, 정영진, 김한수, 문상혁. 2002. 부수주의 적용과 감사인간의 품질차이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제38호: 1-40.
- 정문중. 1994. 자유수입제와 감사인의 독립성. 회계학연구: 247-273.
- 정문중, 이제맹. 1996. 회계감사 품질대용치와 산업별 전문 감사인: 우리 회계감사 시장의 현황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5권 2호: 239-274.
- 정영무. 2009. 감사인 의무규제제도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정은하. 2006. 감사인 유형에 따른 감사품질 실증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석우. 1999. Big5 감사인과 Non-Big5 감사인에 대한 감리결과 비교. 회계와 감사연구 제35호: 53-80.
- 정영진. 2005. 비적정의견 표명과 이익조정간의 관리성 연구. 회계와 감사연구 40호.
- 최관,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23권 제2호: 49-75.

- 최관, 이진화. 2000.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수와 자유화를 전후로 한 실증분석.
- 최정호. 2005. 회계제도개선과 감사품질이 재량적 발생의 크기와 정보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 연구 제20권 제2호: 107-148.
- 최국현, 신안나. 2006. 신용등급평가가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회계정보연구 제24권 제1호: 125-158.
- 최국현. 2007. 감사인 규모 유형별 감사품질에 대한 실증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제20권 제4호.
- 황인태, 강선민, 정도진. 2008.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경영학연구 제38권 제1호: 1-34.
- Becker. C., M. DeFond, J. Jiambalvo.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24.
- Bradshaw, M., S. Richardson, and R. Sloan. 1999. Earnings Quality and Financial Reporting Credibility: *An Empirical Investigation. Working Paper.*
- Bradshaw, M., S. Richardson, and R. Sloan. 2001. " Do Analysts and Auditor Use Information in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9 (june): 45-74.
- Bartov, E., F. Gul, and J. Tsui. 2000. Discretionary-Accruals Models and Audit Qualification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December): 3-37.
- Bultler, M, A Leone and Willenborg. 2004. An Empirical analysis of auditor Reporting and its Association whit abnormal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june): 139-165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December):* 183-199
- Dechow, P. 1994. Accounting Earnings and Cash Flows as Measures of Firm Performance: The Role of Accounting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8(July): 3-42.
- Dechow, P., S. Kothari, and R. Watt. 1998. The Relation between Earnings and Cash Flows. *Th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133-168.
- Dechow, p. and I. Dichev. 2002. The Quality of Accruals and Earnings: The Role of Accrual Estimation Errors. *The Accounting Review* 77(September) : 35-59.
- DeFond, M., and J. Jiambalvo. 1994. Debt Covenant Violations and Manipulation of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17(January): 145-179.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s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February): 35-68.
- Francis, J and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 Spring: 135-165
- Healy, P. and J. M. Wahlen. 1999. A Review of the Earnings management Literature and its Implications for Standard Setting. *Accounting Horizon* 13: 365-384.
- Jeter, D. C., and L. Shivakumar. 1999. Cross-sectional Estimation of Ab-normal Accruals Using Quarterly and Annual Data: Effectiveness in De-tecting Event-specific Earnings Management. *Accounting and Business Research Vol 29. No.4*: 299-320
- Kaszni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Earnings Management .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Spring): 57-81.
- Kothari, S., A. Leone, and C.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 Palmrose, Z. 1986. Audit fees and auditor size: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pring): 97-110.
- Palepu, K. G. 1986. Predicting Takeover Targets: A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March): 3-35.
- Sarah, E. and B. Lewis. 1990. Determinants of Auditor Expertis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Supplement): 1-28
- Shivakumar, L. 1996. Essays related to equity offerings and earnings management. Dissertation. *Vanderblit unirelsity*.
- Simunic. D., and M. Stein. 1996. The Impact of Litigation Risk on Audit Pricing: A Review of the Economics and the Evidence.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 Theory* 15 (Supplement): 119-134.
- Sloan, R. G. 1996. Do stock prices fully reflect information in accruals and cash flows about future earnings? *The Accounting Review* 71(July): 289-315.
- Subramanyam, K. 1996. The Pricing of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2(Aug-Dec): 249-281.
- Watts, R. and J. Zimmerman. 1986. Positive Accounting Theory.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NJ)*.
- Willingham, J., and W. Wright. 1986. Financial Statement Errors and Internal Control Judgment.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Spring): 57-70.

국문초록

감사인 유형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제주지역 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 기업을 감사하는 감사인 유형에 따라 감사품질이 차별화 되어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데 있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의해 많은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국외기업들도 활발하게 제주로의 이전 및 설립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 기업들이 감사인을 선택함에 있어 감사품질은 충분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감사인 유형은 외국 대형회계법인(Big4)과의 제휴 여부와 Big4이외의 일반회계법인 그리고 제주지역 특성상 감사반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여 감사반으로 구분하였으며 감사품질의 대응치로는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5년 동안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Value를 통해 재무자료 확인이 가능한 12월 결산법인 중 금융업종 및 투자전문회사를 제외한 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감사인 유형을 좀 더 세분화한 감사품질의 차이 분석에서 감사인 조직의 성격이나 규모가 이질적인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에 비하여 피감사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이 낮다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감사반의 경우 감사품질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원인은 감사반의 경우 회계법인과 달리 본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업무 지침서가 존재하지 않고 정기적인 감리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 개인 공인회계사들이 각자의 일에 종사하다 연말 감사시즌에만 모여 각자 담당할 감사만을 수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보니 같은 감사반원들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지지 않아 일관된 감사품질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와 달리 감사반이 높은 감사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제주도내의 감사시장 현황을 감안하여 감사인 유형구분을 달리 하여 감사인간의 재량적 발생액을 평가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를 통해 밝혀진 연구 결과는 도내 입주

기업들에게는 감사인 선택에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될 것이며,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사인에게는 고품질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tudy on Effect Given by Auditor Type to Audit Quality -Case of Enterprises in Jeju Area-

Ko, Young Min

Departmen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Kim, Dong Wuk

This study is purposed to verify empirically whether the audit quality has been differentiated as per the auditor type inspecting the enterprises in Jeju Area. Recently, considering that not only a lot of domestic enterprises but also foreign enterprises are actively moved to Jeju and established in this area as per the ordinance for promotion of investment attraction such as special law for installation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free city, foreigner investment promotion law and etc., the audit quality will become the sufficient consideration objective in case the enterprises select the auditor type. As for the auditor type, it is divided in the audit team considering whether to have the alliance with the foreign large accounting firm (Big4) and the general accounting firm besides Big4 and the weight occupied by the audit team under the characteristics of Jeju Area, and as the substitute value of the audit quality, the discretionary accruals has been used. The enterprises except the financial business

category and the investment expert enterprise among the corporations, which have settled the accounts in December, that can be confirmed through KIS-Value of Korea Information Service Inc. for 5 years from 2004 to 2008 for the empirical analysis, were used as the samples.

On comparison analysis of audit quality by compartmentalizing the types of auditor as a result of this study, in case of heterogeneous auditing team of the character and size of the organization, compared to auditing firm, the audited company's audit quality appeared as discretionary production amount is low. As such, in case of auditing team, the reason for relatively low audit quality is, in contrast with auditing firm, lack of systematic work guideline from the headquarters, irregular audit and difficulty to maintain constant audit quality because of lack of communication among the audit team members since the teams are formed in auditing seasons at the end of the year to conduct the audit under one's responsibili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tudy and the precedent one is based on the fact that this study evaluated the discretionary accrual among the auditors by varying the division of the auditor type in consideration of the audit market status in Jeju Province showing that the audit team possesses the high audit market share being different from the domestic. The research results clarified through this will be used as the useful information when the moving-in enterprises in this province select the auditor, and it can provide the auditors making activities in this province with the attraction to execute the high quality of audit.